

순천대학교 학생생활관 생활관비 심의위원회규정

제정 2013. 10. 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33조에 따라 순천대학교 학생생활관 생활관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생활관 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관비 책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학외 인사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되며, 위원은 생활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생생활관 담당 업무 주무가 된다.

제6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13. 10. 0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